

2017년도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2017. 1.

이 안내서는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agrix.go.kr](http://www.agrix.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차 례

1. 농지규모화사업 .....	1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2
3. 농지매입·비축사업 .....	3
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4
5.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	5
6. 농기계임대사업 .....	6
7. 들녘경영체육성사업 .....	7
8.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8
9. 쌀가공산업육성사업 .....	9
10.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	10
11.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	11
12.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	12
13.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	13
14.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	16
15.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	17
16.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18
17.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	19
18.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	20
19.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21
20. 식품·외식종합자금 .....	22
21.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	24
22.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	25
23.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보완사업 .....	26

24. 원예시설현대화사업 .....	27
25.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	28
2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31
27. 첨단온실지원사업 .....	32
28.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33
29.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34
30.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	35
31.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	37
32.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	38
33. 임산물수출지원사업 .....	39
34.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40
35. 조림·숲가꾸기사업 .....	41
36. 유기질비료지원사업 .....	42
37. 토양개량제지원사업 .....	43
38.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44
39.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49
40. 신기술보급사업 .....	51
41.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52
42.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53
43.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54
44.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	55
45.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56
46.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58
47.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60
48. 밭농업직접지불제 .....	61
49.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62
50.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	63

5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64
52.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65
53.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	66
54.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	67
55.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	68
56.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	69
57. 취약농가인력지원 .....	70
58.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	71
59.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 .....	72
6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73
61.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75
62. 송아지생산안정 .....	76
63.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 .....	77
64.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	78
6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79
66. 축산경영종합자금 .....	80
67.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82
68.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83
69.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84
7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85
7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86

## 참 고 자 료

1.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	87
2.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	88



# 1

## 농지규모화사업

### □ 사업의 내용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분합을 통한 경영규모 확대 및 경영농지의 집단화를 추진,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 지원내용

- (농지매매사업) 비농가, 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만64세 이하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농지를 매도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2030세대, 만64세 이하 농업인, 신규취농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5~10년)
- (농지교환분합사업) 교환분합 차액,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

### □ 사업대상자

- (농지매매사업)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만64세 이하의 농업인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만64세 이하의 농업인,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만 64세 이하의 자
- (농지교환분합사업) 교환분합, 경지정리 집단환지 관련 농업인

### □ 지원조건

- (농지매매사업) 융자 100%, 연리 1%, 11-30년 균분 상환  
\* 지원상한 : 논·밭 3.5만원/3.3㎡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융자 100%, 무이자, 5-10년 균분 상환
- (농지교환분합사업) 융자 100%, 연리 1%, 10년 균분 상환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연중

\* 문의 : 1577-7770, 홈페이지 : [www.fbo.or.kr](http://www.fbo.or.kr)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 □ 지원내용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 장기임대 지원

### □ 사업대상자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 3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

### □ 지원조건

- 감정가격으로 매입, 용자 100%, 매입가격의 1% 이내의 임대료
  - \* 지원한도 : 6만원/㎡, 부채금액의 100%이내(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연중

- \* 문의 : 1577-7770, 홈페이지 : [www.fbo.or.kr](http://www.fbo.or.kr)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고령은퇴, 이농·전업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2030세대, 젊은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여 농지이용 효율화 도모

### □ 지원내용

- (매입)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를 매입단가 상한 내 매입
- (임대) 5년간 임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결정

### □ 사업대상자

- (매입) 고령은퇴, 이농·전업 농업인 등
- (임대) 전업농, 2030세대, 창업농, 귀농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등

### □ 지원조건

- 용자 100%
  - \* 매입단가 상한 : 25,000원/㎡(단, 특·광역시 및 경기·경남 시지역 : 50,000원/㎡; 충남·경북 시지역 : 35,000원/㎡)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연중

- \* 문의 : 1577-7770, 홈페이지 : [www.fbo.or.kr](http://www.fbo.or.kr)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7)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 사업의 내용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 □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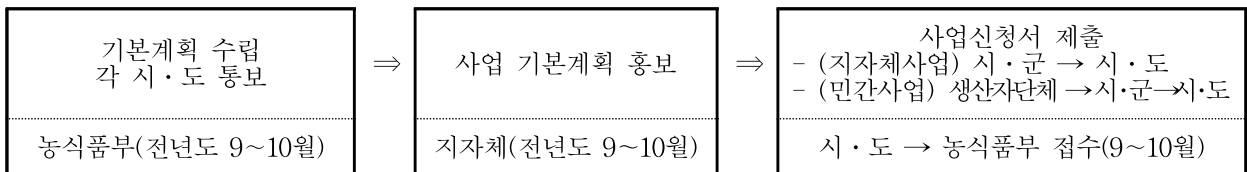
###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3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50%, 지방비 30~40%, 자부담 20~40%(내역별로 상이)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목적

-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대 및 비상시 해외곡물 공급기반 저변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밀, 콩, 옥수수, 카사바 등 국내 수요가 많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생산과 연계되는 가공), 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 \* 단, 인건비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용 등

### □ 사업 대상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 해외농업자원 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1조) 중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 지원조건

- 국고 융자지원(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 비상시 정부의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관련)에 따라,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여야 함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신청 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061-338-6523, 6529)
- 융자 신청 기간 : '17. 1. 16(월) ~ '17. 6. 30(금) \* 별도 공고 예정
  - \* 예산 조기 소진 시 융자 신청 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061-338-6523, 6529)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20, 2021)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각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임대농업기계를 보유하고, 농업기계가 필요한 농가에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

### □ 지원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소 : 임대농기계 및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하며 임대농기계 구입비 중 여성친화형 농기계 10% 이상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임대사업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100% 구입
- 주산지 일관기계화 : 주산지 중 5ha 이상 집적화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10% 이상 구입
  - \* 여성친화형 농기계 : 관리기(보행형, 승용형), 동력이식기, 동력운반차(보행형, 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소형농업기계

### □ 사업 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 지원조건

- 지원단가 : (농기계 임대사업소) 800~1,600백만원/개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50백만원/개소, (주산지 일관기계화) 200백만원/개소, (노후농기계 교체지원) 200백만원/개소(국비50%, 지방비5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장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40~1)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50ha 이상 들녘에 대해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와 사업다각화\* 지원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 논 이용을 다양화(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타작물 전환)하고 생산된 쌀·타작물 등을 가공·판매·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창출

###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재배기술, 농기계 관리, 조직관리, 운영비 등
- (시설·장비) 생산과정에서 공동영농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등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
- (사업다각화)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컨설팅, 이모작 및 타작물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정비, 가공·판매·체험·관광 등의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등

### □ 사업대상자

- ‘들녘경영체’로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정부지원RPC 등
  - \* 지원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참조

### □ 지원조건 : 보조

-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 (교육·컨설팅) 100ha미만 1천만원 이내, 100ha~200ha 2천만원 이내, 200ha~400ha 3천만원 이내, 400ha이상 4천만원 이내
  - \*\* (시설·장비) 400ha미만 2억원 이내, 400ha~600ha 3억원 이내, 600ha이상 4억원 이내
- 사업다각화(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10억원(사업기간 2년) 또는 20억원(사업기간 3년) 이내로 분할 지원
  - \* 사업기간 2년은 매년 50%, 3년의 경우는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비율로 지원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담당과('18년 사업신청, 2017.4.30까지)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7, 1838)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내외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용도
  - 고품질 쌀 브랜드 : 벼 가공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 건조·저장시설 증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기준 :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 후 예산내에서 고득점 업체에 지원

### □ 사업대상자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개인
- 벼 건조·저장시설 :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정부지원 RPC가 없거나 벼 재배면적이 12천ha 이상인 시·군의 농협

### □ 지원조건

- 고품질 쌀 브랜드 : 30억원기준(국고 30%,지방비 30,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 3~9억원기준(국고 30·50%, 지방비 10, 자부담 40·60)
  - \* 기준사업비는 여건에 따라 증감가능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각 시·군 담당과 (3월말까지)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의 시설·개보수, 운영자금, 구매자금 등의 지원으로 다양한 쌀가공품 생산 여건 조성으로 쌀소비 확대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관리 양곡 품질 향상 도모

###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쌀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원료구매자금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구매 지원자금
  -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는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한정

### □ 사업대상자

- 쌀(정부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 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영, 구매자금 : 2년이내 상환,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 사업신청 기관 : 각 시·군 담당과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20~1) 식량산업과(044-201-1842~3)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목적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의 규모화·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 고품질생산, 부가가치 창출

### □ 지원내용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공정 육묘장, 농기계류, 시설·장비 및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
  - \* 1년차(조직화): 품질관리(육묘장), 생산비절감(농기계 등), S/W(컨설팅, 교육 등)
  - \* 2년차(차별화): 품질관리(GAP기반), 생산비절감(생산시설), 소득증대(저장·가공시설) S/W(조직화교육 등)

### □ 사업 대상자

- 발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 공동경영체 : 발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2년차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16년 10월, '17년 1월)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 □ 지원내용

- 「농안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기준 중 경매장, 주차장 등 필수시설과 저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 및 기타시설의 현대화 비용, 설계비·감리비 등 시설부대경비
  -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 사업대상자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40%, 지방비 30%
  - 융자 : (금리) 3%,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 도매시장 개설자가 융자의 지방비 대체 및 융자 상환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사업신청요건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 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 타당성 조사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4년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3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여부 결정)
  - '15년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MD조사\* 추가 의무화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2017년 3월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1)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
  - (공동선별비) 공동선별·출하·계산 물량에 대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 (물류기기공동이용) 일괄 팰릿타이징을 위한 물류기기 임차비 지원

### □ 지원내용

- (공동선별비)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 □ 사업 대상자

- (공동선별비)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 지원조건

- (공동선별비)
  -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국고보조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매취) 국고보조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매취) 국고보조 20%, 자부담 80%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국비 40%, 자부담 60%
  - \*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20% 추가 지원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공동선별비) : 지자체('16.9월중)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17.1월초)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9, 2223)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일반APC

## □ 사업의 목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 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 □ 지원내용

- 감리, 토목 및 건축공사
  - 전기소방통신,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전처리장 등
- 시설·설비 및 장비류
  - 선별기, 전처리시설, 신선편이시설,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위생실 등

##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협동조합
-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

## □ 지원조건

- 기본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 통과 및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6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보완시설 60억원 내외(최소 5억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지자체(예비신청 2.10.까지, 본신청 6.2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산물유통과 등 \*실집행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 사업의 목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 지원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및 SW부분 지원
  - \* SW : USN을 활용한 가공장 모니터링, RFID를 활용한 유통·물류관리 등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 □ 사업 대상자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으로 등록된 자

### □ 지원조건

- 신규시설 : 21억원/개소당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보완시설(신설) : 6억원/개소당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 보완시설 지원사업은 '18년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실시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인삼산업 담당과('17.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③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 5톤) 신규 구입 및 개조
- 채소류출하조절시설 :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급속냉동시설, 저온냉동시설, 작업실
- 화훼류습식유통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 등

#### □ 사업 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인출하농가 (화훼류 습식유통), 양잠 생산자조직(양잠산물저온유통) 등

#### □ 지원조건 및 사업신청기관

사업명	지원조건	사업신청기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지자체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국고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자체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지자체
화훼류습식유통	국고 50%, 자부담 5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9),

원예산업과(044-201-2232), 원예경영과(044-201-2261),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71)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도매시장·공판장, 생산자단체 등에 선도금, 결제자금, 구매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 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 □ 사업별 주요 내용

### ①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사용용도 :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사업대상자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지원조건 : 용자 100%

\* (선도금·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연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연리 3% 1년 상환

### ②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사업

- 사용용도 :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공판장, 중도매인
- 지원조건 : 용자 100%

\* (선도금·결제자금) 연리 3% 1년 상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연리 1.5% 1년 상환

### ③ 화훼유통개선지원 사업

- 사용용도 : 선도금, 결제자금
- 사업대상자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 화훼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등
- 지원조건 : 용자 100%

\* (선도금) aT공판장: 연리 2.5% 1년 상환, 농협공판장: 연리 3.0%, 1년 상환  
(결제자금) aT공판장, 농협공판장: 연리 3% 1년 상환

### ④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

- 사용용도 : 국내산 밭작물(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잡곡 등) 구매를 위한 선급금·매취자금,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가루) 구매자금
- 사업대상자 : 주요곡물경영체로 선정되어 정책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영체, 국산밀을 원료로 가공 등을 하는 업체
- 지원조건 : 용자 100%

\* 변동금리 또는 연리 3% 1년 상환(계열화경영체, 생산자단체 2.5%, 1년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2017년 2~3월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원예경영과(044-201-2262), 식량산업과(044-201-183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목적

-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

### □ 지원내용

- 조직화 : 농가 교육·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 조직화 관련 비용
- 홍보·마케팅 : 상품개발, 판촉행사, 시장개척, 광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 등의 관련 비용

### □ 사업 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 \*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로 선정된 통합조직(참여조직 포함) 또는 품목광역조직

###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품목광역조직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자체는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전년도 1월말)

□ 사업주관/협조기관 : 각 시·도 및 시·군/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고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목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참여조직도 동일하게 적용
- 선지급금(운전자금), 자가 생산을 위한 영농자금 등

### □ 사업 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1~3%(3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기간 : 3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1.25. 18:00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고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 지원내용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개설 등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및 홍보 등

###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및 사회적기업
  - \* 직매장은 총출자금 50백만원 이상 조직,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농업인 조합원 10인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생사자단체(농업인중심의)지분)51% 이상,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보조 30~100%, 자부담 0~100%, 용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2.5~3%(고정 및 변동금리) 1년상환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1~2월)

###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85, 2218)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고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목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 확보

### □ 지원내용

- 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성 향상, 교육 및 홍보, 수급안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사업대상자

- 「농수산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 단체

###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50%, 자부담 50%
  - \* 자조금 단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1.15일까지)

###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담당부서

- 제도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4)
- 채소·특작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032~3, 2238~41)
- 과수·화훼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3, 2256~62)
- 친환경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2440)
- 육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2)
- 밀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5~183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고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목적

- 인삼·약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약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이력관리가 된 안전한 인삼·약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 지원내용

- 계약재배 :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약정하고 나서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용자 지원
- 수매사업
  - (인삼·약용작물) 인삼·약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한 물량에 대해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용자 지원
  - (인삼 종자) 인삼종자를 농가로부터 계약·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용자 지원

###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 지원조건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상환), 인삼종자수매 금리 0%(1년 거치 상환)
  - 약용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년 거치 상환), 수매자금 2.5~3%(1년 거치 상환)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17년 3월)

###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2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와 국내산 농산물 매입지원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 생산자와 제조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창출과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확보 체계 지원

## □ 지원내용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시설자금
  -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식품업체로, 대표자가 농업인인 업체에 한해 운영자금도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금 : 시설 및 국내산 식재료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국내산 농산물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 및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을 위한 운영자금

## □ 사업대상자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 지원제외 :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공급업체, 커피, 주류전문점, 숙박업 등 타 업종과 겸영하는 업체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지원
  - 국내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 농식품부·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09년~'11년 생산자용복합형 식품제조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조합등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에서 산정하는 금리(금리변경은 최초 대출 후 6개월 주기)  
※ 단,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고정 또는 변동)은 해당 대출기간중 변경 불가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 외식업체육성 :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1년)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운영자금(1년)
-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이내)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2017년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9),  
외식산업진흥과(044-201-215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목적

- 전통발효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

### □ 지원내용

- 사업별 인건비, 재료비(임차비), 홍보비 등 행사비용, 기타운영비 등 지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 사업 대상자

-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유통업체, 식품명인 및 식품명인 전수자, 관련 협회, 교육훈련기관, 협업기관,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 지원조건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를 통해 수행하는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변 확대·유통 활성화, 품질고급화·세계화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지원  
[국고 보조 50%~100% (세부사업별로 상이)]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각 지자체

- \* 기한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진흥부(061-931-0731)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44-201-2134)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목적

- 직거래·계약재배 등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 □ 지원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축산물 등 원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 사업대상자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공급업체 등 산지유통업체
  -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일 경우 지원 가능
  -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등

###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는 2.5~3%(고정금리 기준, 1년 이내), 변동금리도 적용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17년 3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02-6300-1794)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확산 도모

### □ 지원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등)부산물 처리시설 등

### □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 지원조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액 : 100백만원 이내/개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 농지과 등, 2017년 2월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현대화 및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 지원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현대화(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등), ICT 융복합 확산(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설치 지원

### □ 사업 대상자

- 농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 및 고추재배 농업인·농업법인, APC·농협·농업법인 소속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17년 1월, 전년도 10월)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 사업의 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 지원내용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등

## □ 사업 대상자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은 지원 제외

## □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국고용자 상환조건 : 연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읍면동사무소(전년도 10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②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 □ 사업의 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 지원내용

-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461천원/ha, (조성사업비) 32,520천원/ha

### □ 사업 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2km 이내로 한정)

### □ 지원조건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 기반조성비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전년도 2월말까지)

###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③ 과원규모화

#### □ 사업의 목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 □ 지원내용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매입자금 지원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차료 지원

#### □ 사업 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17년도의 경우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과수재배 경력 3년 이상의 법인으로서 소유과원이 영농조합법인 3ha이상, 농업회사법인 5ha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 □ 지원조건

- 과원매매 : 연리 2.0%,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 무이자(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전년도 1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 □ 사업 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지원조건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 공기열냉난방시설	20%	30%	30%	20%
- 지열냉난방시설	50%	10%	20%	20%
- 지중열냉난방시설	60%	10%	20%	10%
- 폐열재이용시설	60%	10%	20%	10%
-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1월)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목적

-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 □ 지원내용

-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온실 내 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등 포함) 및 시설개선(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 □ 사업 대상자

- 온실을 신·개축 및 개보수하여 채소·화훼·버섯류 등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지원조건 : 국고융자 100%(융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구분		신청규모	온실유형	융자금리	상환기간
온실 신축	일반 유형	0.2ha 이상~2ha 이하	비닐온실	1%	3년거치 7년상환
		0.5ha 이상~2ha 이하	철골온실	1%	5년거치 10년상환
		2ha 초과~5ha 이하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지자체 개발유형	3ha 초과~5ha 이하	철골온실	2%	5년거치 10년상환
시설개선		-	-	1%	3년거치 7년상환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자치구청

- 사업수요 신청(전년도 9월), 사업신청(1월)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내용

-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사유림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산림의 가치 증진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대상자

-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유림 소유자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5,200원/ha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 산림관련부서(전년도 1.20일까지)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 □ 지원내용

- 국고용자 : 임업경영기반조성(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 사립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 조성·운영(사립 수목원 조성·운영, 사립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사립 수목장림 조성, 사립 치유의 숲 조성 등), 산양삼 생산, 해외산림투자지원
- 이차보전 :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재이용활성화지원(목재이용·가공 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수출원자재 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

### □ 사업대상자

- 해당 사업별 지침 참조

###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1.0~3.0%
- 융자기간 : 5~35년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산림조합(사업 예정년도 수시신청)

###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 지원내용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상품화 지원
- 임산물생산기반 정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 등

### □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은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 □ 지원조건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내역 사업	보조비율(%)				용자조건 (금리,거치/상환)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input type="checkbox"/>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50	20	-	30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50	20	-	30		
다. 곱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50	20	-	30		신규
<input type="checkbox"/> 임산물 클러스터	50	50	-	-		신규
<input type="checkbox"/>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상품화 지원	20	20	20	40	2.0%, 3년/7년	
나. 유통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다. 유통기반조성(곶감)	20	20	20	40	2.0%, 3년/7년	신규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내역 사업	보조비율(%)				용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비	지방비	용자	자부담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가. 토양개량제지원	70	20	-	10	-	
나. 유기질비료지원	3,500(원)	1,500(원)		잔액	-	혼합유박
	1,400(원)	600(원)		잔액	-	2종
<input type="checkbox"/>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40	20	-	40	-	
나.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40	40	-	20	-	
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라. 산림복합경영(소액)	20	20	20	40	2.0%, 3년/7년	
마. 밤대체작목조성	40	20	-	40	-	
<input type="checkbox"/>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	
<input type="checkbox"/>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가. 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읍·면·동)(전년도 1.20일까지)

- 농산버섯 등 농산물(농식품부 소관 농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을 임산물 담당부서에 신청하는 경우 접수 후 농산물 담당부서에 이송

- 순수 용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자원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4, 4196, 4206~9)

- 시·도, 시·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 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 지원내용

- 산림청에 등록된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58.14kW이하) \* 3,000대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농산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는 우선 지원
  - 화목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지원조건

- 주거용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기준단가 : 1세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 산림부서(대상자 선정 완료시까지)

###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1)

해당 시·군·구(읍·면·동) 펠릿보일러 담당 산림부서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 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 지원내용

- 산림청에 등록된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58.14kW이하) \* 3,000대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농산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는 우선 지원
  - 화목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지원조건

- 주거용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기준단가 : 1세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 산림부서(대상자 선정 완료시까지)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1)

해당 시·군·구(읍·면·동) 펠릿보일러 담당 산림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목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임산물 수출활성화 추진

### □ 지원내용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 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 □ 사업 대상자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 관련 법인·단체 \* 신청제외 대상도 명시 필요

### □ 지원조건

- 임산물 수출활성화(농특) : 정부보조 30~100%, 자부담 0~70%
-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특화지역 육성(농특) : 정부보조 50%, 지자체 20%, 자부담 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지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신청기한 :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름)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 생산지원팀(02-3434-7329~30)
- 해외시장개척·수출기반구축 : aT 임축산수출TF팀(061-931-0830~3)
- 임산물수출촉진(지특), 수출특화지역육성(농특) : 지자체 시·군·구 산림부서, 한국임업진흥원(02-6393-2711)

###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aT, 지자체 산림부서

###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임업통상팀(042-481-4086~7)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내용

- 초기 귀산촌자 및 희망자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을 통해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임업 창업》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또는 산림복지서비스분야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 사업대상자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2.0%
- 용자기간 :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산림조합(사업 예정년도 수시신청)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2)  
산림조합중앙회(02-3434-7221, 7223, 7233) 및 산림조합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 지원내용

- 조림 : 경제림조림(유휴토지조림 포함),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 사업대상자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숲가꾸기(보조사업)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전년도 2월말까지)

###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5, 4218)

- 지방자치단체(사업주관) : 시·군·구청 / 산림담당부서(산림녹지과 등)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 산림소유자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및 지원규모 : 1,600억원, 3,200천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 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부숙유기질 비료	1,100	1,000	800
유기질 비료	1,4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의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 자금유형(국고)

- 사업비/사업물량 : 57,560백만원/600천톤

### □ 지원조건(안)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개시 전년도 1~4월, 추가 및 변경 신청(사업전년도 10.20~11.30일)

###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농축산경영자금

## □ 사업의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 □ 지원내용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을 위한 경영비 지원

## □ 사업 대상자

- 경종, 원예·특작, 축산 등에 종사하는 농가(농업경영체)

##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변동)
- 대출기간 : 1년 이내 (재해경영자금은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시 원금 및 이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농업경영체당 1,000만원 이내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축협 본·지점(연중)

##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02-2080-7588)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금융과(044-201-1746)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농업종합자금

### □ 사업의 목적

-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타당성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을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도모

### □ 지원내용

-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

### □ 사업 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수출및규모화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 가공식품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우수기술사업화 업체, 무기질비료업체 등

\* 단, 직업보유제한자,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 이내(운영자금은 1회전소요자금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세부사업에 따라 달리 적용)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 거치 3~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은행 영업점, 농·축협 본·지점(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02-2080-7592~4)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 농촌주택개량사업

#### □ 사업의 목적

- 넓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촉진을 통해 농촌주거환경 향상
-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 도모

#### □ 지원내용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건축비용 용자지원

#### □ 사업 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보유자 제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운용
  - 고정금리 : 연리 2%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사업실적확인에 따른 건축 소요비용 이내(2억원 한도)

□ 사업신청 기관·기한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기간 : '16.12.1~'17.1.31)

□ 사업주관기관 : 각 시장·군수·구청장,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8)  
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④ 농업경영회생자금

##### □ 사업의 목적

- 자연재해, 가축질병, 농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 목적

##### □ 지원내용

-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3년 이내에 도래되는 농업용대출금의 대환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하지 못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의 대환
- 피해복구자금, 1시설 개보수자금, 1회전 운전자금 등

##### □ 사업 대상자

- 건설하게 농축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 □ 지원조건

- 대출금리 및 기간 : 연 1%,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한도 : 10억원 한도(농업법인인 경우 15억원 한도)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은행 영업점, 농·축협 본·지점(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02-2080-758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4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⑤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 사업의 내용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6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 사업대상자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개인, 정부지원 DS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등
  - \* 정부지원 RPC : 정부지원 진입기준에 따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한 도정업체
  - \* 정부지원 DSC : 정부지원 진입기준에 따라 건조·저장시설을 일관설치한 업체

###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융자금(1년 이내 상환)
- RPC별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배 이상을 당해연도 수확기에 농가 벼를 의무적으로 매입(단, 통합 RPC는 우대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대하여 1.2배 이상 확보하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 의무 매입)
- RPC 수탁매입은 자율로 하되, 수탁 우수RPC에는 인센티브자금 지원

□ 사업신청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농협중앙회, 한국RPC협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 183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 신산업인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 **첨단생산기술개발** : 생산 작업에 필요한 비용, 노동력, 시간, 에너지를 줄이고, 생산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IT, BT 기술을 융복합한 첨단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개발, 가공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수출 기반 구축 및 저장·유통·검역 기술개발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 : 상품화·제품화를 위한 사업화 연구(R&BD)를 지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연구인력 미스매치 해소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및 사후 관리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
- **Golden seed 프로젝트** : 국가전략형 수출·수입대체 종자 개발을 통한 글로벌 종자시장의 선점으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분야의 종자산업 성장 기반 구축
-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 : 농식품 유용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산업화·실용화 촉진 및 정보 자원화

## □ 지원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중소기업 규모의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
- 지원규모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 과제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초과가능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신청 기관 :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 \* 온라인([www.fris.go.kr](http://www.fris.go.kr))으로만 접수 가능
- 사업신청 기한 : 사업시행계획 공고마감일
  - \* 각 내역사업별로 연중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되며 사업별 신청기한은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7)  
식품산업정책과(044-201-2119)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8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 지원내용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2017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사업대상자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 세부 사업별 사업대상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참고

### □ 지원조건

- 13개 세부사업 963개소, 총사업비 77,950백만원(개소당 5~500백만원)
  - ※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임(국비50%, 지방비50%)
  -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17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참고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농업기술센터(2017년 1월중)

- ※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바람

###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1, 0973)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자문 비용의 일부를 최대 3개년 지원  
※ 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 사업 대상자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아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에 해당하며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 ① 설립2년 이상의 법인경영체 -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 제출의무(결산서로 대체 가능) ②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 지원조건

- 국고30%, 지방비20%, 자부담50%
  - (개별) 총사업비 1,000만원 이내
  - (법인) 기초, 전문, 혁신의 법인 역량 진단에 따라 총사업비 2,000~5,000만원 이내 차등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농정부서, 전년도 11월~12월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4, 153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예비)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시설, 주택 구입 등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유희인력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 □ 지원내용

- 자금 사용 용도
  - (농업 창업)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및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의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구입·신축) 주택구입·신축, 구입한 농가주택의 증·개축

### □ 사업 대상자

-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자 중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발한 자
  - ①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②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
  - ③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도시)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④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제외)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병역 미필자, 고등·대학교 재학생, 금융기관 연체자, 회생중인 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 지원조건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NH농협은행)
-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창업자금(3억원, 2%), 주택구입·신축(75백만원, 2%)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 NH농협은행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8-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 지원내용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시설 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자금을 지원(융자)
  - 농지구입 및 임차(3년 이상), 하우스 등 시설 설치, 가공시설 설치 비용 등
  - 경영장부 작성, 회계·세무 등 농업경영 역량 향상을 위한 경영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 사업대상자

- 신청연도 현재 만18세이상 만50세미만이면서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로서,
  - 농업 교육실적이 있으며,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2%(고정금리, 이차보전)
  -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상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 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신청기간: 1.13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2-3)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02-2080-758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 □ 지원내용

-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쌀 직불금 (고정+변동)으로 보전

### □ 사업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실경작 농업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전업농 등 법령상의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
  - (고정직불금) 쌀 생산, 타작물재배, 휴경여부 및 쌀값과 상관없이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평균 100만원/ha\*(‘15년~) 지급
    -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1,076,416원/ha, 진흥지역 밖의 농지 : 807,312
  - (변동직불금) 쌀 직불금 등록자 중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논벼를 재배하며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수확기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시 지급
    - \* 변동직불금 단가 = (목표가격 - 수확기 쌀값) × 85/100 - 고정직불금
    - \* 목표가격 : '13년산부터 '17년산까지는 188,000원/80kg으로 고정

###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신청기간: '17.2.1~'17.4.28)

□ 사업주관기관 : (고정)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변동)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6-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목적

- 경영이양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등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 지원내용

- ha당 3,000천원/연(지급 상한면적 매도 및 임대 이양 합산 4.0ha)
  -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3천 제곱미터)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경영이양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 임대·임대위탁
  - 보조금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대 10년(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 대상자

- 2017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43년 1월 1일 ~ 195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단,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제외

### □ 지급 대상 농지

-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법」 제28조에 다른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또는 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등

###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사 또는 경영이양대상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가소득지원부(061-338-591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임야 등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업신청 가능)

###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밭)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유기지속직불) 논 300천원/ha, 밭 600
  -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 없이 발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인증종류(유기·무농약)에 따라 총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7.3.1~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초화류로서 경관개선효과가 있는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작물
    -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농가지급)
    - \* 단,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 불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파종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60~1)

□ 신청기관 : 읍·면·동(신청기간 : '17. 3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목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 지원내용

- 농가소득 안정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작물 재배농가에 밭농업 보조금 지급

### □ 사업 대상자

- 밭농업(밭고정, 논이모작)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 지원조건

- 국고 100%지원(밭고정 평균 45만원/ha, 논이모작 50만원/ha)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평균 45만원
    -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575,530원/ha, 밖의 농지 : 431,648원/ha
  - 논이모작직불금 : 1만제곱미터당 50만원(m<sup>2</sup>당 50원)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간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17.2.1~'17.4.28)

###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및 자치구의 구청(농정과 등)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8~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목적

- 농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 지원내용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 지급단가 : 논·밭·과수원 55원/m<sup>2</sup>, 초지 30원/m<sup>2</sup>

### □ 사업 대상

- (사업대상지역)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의 모든 법정리
- (사업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 (지원자격)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거나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농지(초지)에 한함

###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의무)

### □ 사업신청 기관 : 읍·면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 사업신청 기간 : 조건불리지역직불 사업신청서(마을별,1월말) 조건불리보조금 신청(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농가별, 2. 1~ 4.28.)

### □ 사업주관기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시·군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8~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등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한도 : (유기) 30백만원/년, 5년간 || (무항생제) 20백만원/년, 3년간

구분	축종	단위	유기	무항생제	비고
지급 단가	한 우	원/마리	170,000	65,000	육우는 한우의 50%
	젖소(우유)	원/리터	50	10	
	돼 지	원/마리	16,000	6,000	
	산 란 계	원/개	10	1	
	육 계	원/마리	200	60	토종닭은 육계의 130%
	오 리	원/마리	400	120	
	오 리 알	원/개	20	2	
	메추리알	원/10개	-	4	
	산 양	원/마리	-	4,584	
	산 양 유	원/리터	-	34	

### □ 사업 대상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농어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에 한함.

### □ 지원조건 : 국고 10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장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17. 3. 2. ~ 3. 20.)

###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정보과)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044-201-2380, 2382)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개념 :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관광·체험·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 규모

구분	면적
농어촌관광휴양단지	1만5천㎡이상 100만㎡미만
관광농원	10만㎡미만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 : 본인이 거주하는 연면적 230㎡미만의 주택

### □ 지원내용 및 조건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별도 지원 없음
- 관광농원 : 농업종합자금(용자)으로 시설설치·개보수(고정 2.0%, 변동 선택 가능) 및 운영자금(고정2.5%, 변동) 지원
- 농어촌민박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개보수(고정 2.0%, 변동 선택가능, 단 신축 및 전면개축과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및 운영자금(고정2.5%, 변동) 지원

### □ 사업대상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 관광농원 :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농어촌민박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주민

### □ 사업신청 기관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지정, 사업계획 승인, 사업자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90)

### □ 사업의 내용

- (목적) 주민주도의 현장포럼 운영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및 캠페인 추진, 농촌지역 교통·의료·문화·보육·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농업인 건강증진 및 삶의질 개선 등

### □ 지원내용

- 농촌현장포럼 및 활성화지원센터,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농촌 집 고쳐주기), 농촌사회 복지증진 사업(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사업, 농촌 교육·문화·복지 증진사업, 농번기 주말돌봄방, 농촌 보육여건개선)

### □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주민 등

###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 50% ~ 100%)
- 지원기간 : 1년(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및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2년 지원)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업별 시행지침서 참고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2)

지역개발과(044-201-1562)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2, 1574, 1576, 157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목적)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형성된 경관,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 사업대상지역

- 농촌 다원적자원 및 농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농업유산자원 보유지역
  -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신청지역 포함) 및 농업유산지정지역중 지역행복생활권 우선선정
  -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지역
    - \* 자원이 소재한 마을(행정리) 단위로 지원하되, 자원이 여러 마을에 산재해 있거나, 걸쳐 있는 경우는 여러 행정구역(시·도, 시·군, 읍·면, 리) 단위로도 지원 가능

### □ 지원 형태

- 재원(국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 사업 기간 및 지원 한도

- 사업 기간 : 3년
- 지원 한도 : 유산자원 지정 지역 1개소당 3년간 1,050백만원(국비기준)

### □ 신청기관 : 시·군(신청기간 : '17. 10월까지)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60~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친환경 또는 GAP를 사전에 취득한 농가가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국가 평균 배출량보다 낮게 배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저탄소 인증 부여

### □ 지원내용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사업 참여 농가 컨설팅 및 심사비용
  - (컨설팅) 농가교육 및 데이터 수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 (인증심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품질 타당성 서류심사,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및 생산 현황 등 현장심사

###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농업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협조직, 지자체 등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 인증 신청 제한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연2회) \*상/하반기 별도 공고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044-201-2422)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 □ 지원내용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농가 컨설팅 및 감축실적 정부구매
  - (컨설팅)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작성
  - (감축실적 구매)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1톤CO<sub>2</sub>당 에너지 1만원, 비에너지 2만원)

## □ 사업대상자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영농활동을 하고 있거나 영농활동 예정인 농업경영체(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연2회) \*상/하반기 별도 공고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044-201-2423)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031-8012-7296)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대학 장학금	영농후계	농식품 계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250만원/학기
	농업인 자녀	소득수준,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자녀	50~150만원/학기
고교장학금		농식품계열 및 농촌지역 예체능분야 우수 학생	50만원/연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추가 수혜 가능

###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대학생 자녀, 농업계 고교·대학생 등

### □ 지원조건

-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정액지원(국비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1학기(1월), 2학기(7월)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8~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영농도우미)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되도록 지원
- (행복나눔이)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활동 지원

### □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60,000원 이내)의 70% 지원하며,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행복나눔이) 행복나눔이 활동비(1일 12,000원 이내) 지원하며,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24일 이내)

### □ 사업대상자

-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각 사업별 세부 요건은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국비 70% 자부담 30%, (행복나눔이) 국비 70% 농협 3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역농협, 연중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건강보험료)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연금보험료)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연금보험료)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 □ 사업대상자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 지원조건

- 국비 100%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연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인 대학생 대상 학자금 용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용자 지원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 □ 지원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최소 12학점 이수, 성적 70점(100점 만점 환산시) 이상 필요
  - 농어업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단순거주자는 소득 8분위 이하

### □ 지원조건 및 형태

- 용자조건 : 무이자 용자
- 상환조건 : 졸업 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장학재단, 1학기(1~2월), 2학기(5~7월)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044-201-1578~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볍짚, 초지조성,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가공·유통시설, 유통비 등을 지원

### □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국고보조	지방비	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 사일리지 제조비		30	60	-	10	-
○ 종자·볍짚 처리비		30	-	-	70	-
○ 초지조성(보완)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 기반시설		-	-	80	20	
○ 기계·장비	농가	-	-	8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경영체	10	30	30	30	
○ 가공·유통시설		30	30	-	40	-
○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	100	-	연리2%(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품질평가		50	50	-	-	-

내역사업명		국고보조	지방비	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 조사료 장거리유통비		30~40	-	-	60~70	-
○ 조사료 교육·홍보		100	-	-	-	-
○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	50	40	-	10	
	종자구입비	40	-	-	60	
	기계·장비	20	30	3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퇴액비 시비	40	60	-	-	
	입모중과중	30	30	-	40	
○ 산지생태축산 농장조성	초지조성(신규)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초지조성부담금	40	30	-	30	
	컨설팅	40	30	-	30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교육홍보	100	-	-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2017년 1~2월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044-201-237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

### □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 □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TMR사료제조업체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17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 신청토록 적극 유도

### □ 지원조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8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3%(농업인 2.5%)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3%(농업인 2.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 사료원료구매자금 : 사료관련단체(연 3회 : 2월, 7월, 11월)
  - 농협중앙회(사료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사료제조시설자금 : 지자체(시·도) 축산업무 담당과(연 3회 : 2월, 7월, 11월)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044-201-238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 □ 지원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 □ 사업대상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 지원조건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지역축협), 2017년 1월~5월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3)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목적

-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000m<sup>2</sup>)당 신규조성은 7,137천원, 보완조성은 2,12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조 50%, 용자 50
- (초지조성부담금) 3ha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분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 비율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 보조 70%, 용자 30
  - \* ha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조 70%, 용자 30
- (기계·장비) 30ha당 1set 기준으로 150,000천원 한도내 지원하되,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초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조 40%, 용자 30, 자담 30
- (기반시설)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용자(20% 자담)

### □ 사업 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ha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려)는 자
  - \*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축산과/읍면사무소, '17. 1~2월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044-201-2380, 238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 □ 지원내용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 □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지원조건

- 국비 10%, 지방비 20%, 용자 50%(연리2.0%,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자부담 2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매년 4.20까지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3)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 경력확인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 지원조건

- 국비 10%, 용자 70%(연리2.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자부담 2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사업, '17년 1~3월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브랜드경영체지원

## □ 사업의 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 □ 지원내용

- 브랜드 운영지원 : 브랜드 회원농가 생산지원(출하선급금, 가축경영비, 사료 통일비, 위탁사육비 등), 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 지원(브랜드 개발·마케팅·홍보비판매운영비, 사료구입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등)
- 브랜드 판매시설 : 신규건축, 기존건물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의 50% 이내), 판매·포장·인테리어, 운송차량, 기타 부대시설 등 업소시설 등

## □ 사업 대상자

- 축산물 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지원조건

-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3년 거치 일시상환
  - 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축협조합 3%),
- 브랜드 운영지원 : 융자 70%, 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연리 2~3%(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농·축협조합 3%)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

##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축산계열화사업

### □ 사업의 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 □ 지원내용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 돼지의 경우 인센티브 자금을 한해 지원

### □ 사업 대상자

- 돼지, 닭, 오리, 염소 계열화사업자

### □ 지원조건

- 사육·가공·유통시설 : 용자 70%이내, 연리 2~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계열화사육비 : 용자 50%이내, 연리 2~3%, 2년이내 일시상환
- 인센티브 자금(운영자금) : 용자, 연리 0~1%, 2년이내 일시상환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1월말까지)

###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축산과 등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9)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축산물의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의 경비 지원

### □ 지원내용

-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녹용, 꿀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 □ 지원조건

- 국비 50%, 자부담 50%(민간거출금 규모 대비 100% 이내 지원)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매년 12월말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4)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 지원내용

- 식육판매점포(점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를 거쳐 확인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 도축장은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직거래판매장 설치 시·군·구, 매년 2.15까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어촌정비법 제73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 □ 지원내용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R&D 및 컨설팅 등 지원강화,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구축, 농촌 기업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자부담 5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 / 농업기술센터 등, 2017년 1~3월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8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등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의 내용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 지원내용

-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신규마을조성, 기초생활인프라정비

### □ 사업대상자

- 일반농산어촌개발 123개 시·군

### □ 지원조건

#### ○ 지원기준

- '09년 이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10년 이후 선정된 사업 : 국비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 자부담 기준

-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 : 부지 100%, 시설비의 20%
- 사유시설물 정비 시 : 시설비의 2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 농촌개발사업부서, 2017년 1~3월

\* 농촌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http://www.raise.go.kr))에 신청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044-201-155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의 내용

-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농축산업 주체(농·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농식품경영체 육성

### □ 지원내용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컨설팅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브랜드 개발, R&D지원, 홍보 및 공동이용시설 구축

###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농·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5년간 30억원(국고) 내외
-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50%(단, 시설비의 경우 국고40%,지방비40%, 자부담2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농림사업 신청기한내)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044-201-2185)

-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농림축산식품사업추진 표준업무프로세서

■ e나라도움 □ 오프라인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축산식품부	전년도 5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가내시	농림축산식품부	전년도 10월	·내역사업별 정부안에 맞추어 자치 단체 사업계획 통보
	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치단체	전년도 12월	·가내시 된 내역사업에 맞추어 자치 단체 예산편성(e-호조)
	예산확정 확정내시	농림축산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내시 및 통보 ·내역사업-자치단체 예산편성내역 매핑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 규모 등)
	사업신청 수요조사	사업대상자	당년도 2~4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당년도 2~4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당년도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사업 추진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점검결과 등록관리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sup>2</sup>	m <sup>2</sup>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sup>2</sup>	개소 (   톤)	식	대 (   톤)	m <sup>2</sup>			
<p>(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사 항									



##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								
	○ ○ ○ ○								
	○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공 동 시 설								
	○ ○ ○ ○								
	○ ○ ○ ○								
	기 타 시 설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 ”로 표시

###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 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